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동의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2. 14
제 출 자 : 장 준 호 의원

1. 수정이유

○ 위탁사무 수행시 수탁관리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협약 불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○ 제15조 제3항에 문구삽입

⇒ "배상책임보험은" 다음에 "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"

○ 제21조 제2항에 이행보증금 상향 조정

⇒ "20%"를 "30%"로 하고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변경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제15조 제3항의 "배상책임보험은" 다음에 "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"를 삽입하고

(안) 제21조 제2항의 "20%"를 "30%"로 하고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15조(보험가입 및 손해배상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"을"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"갑"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을 포함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고 그 증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5조(보험가입 및 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배상책임보험은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 ----------.
제21조(협약의 보증) ① (생략) ② 이행보증금은 "갑"이 "을"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한다. 단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	제21조(협약의 보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30% -- ---------- ---------- 3천만원------.